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제10대 강동구의회 의원 증원에 따라 위원회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2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참조 : 의회사무국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5, 전화 : 02)3425-7388, FAX : 02)3425-7292, E-mail : tnk10@gangdo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